의정활동보고서

제188회 임시회(2004. 4. 20～4. 29)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남효채** 행정부지사님과 **이철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188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전 도민의 참여와 협조로 국가적 대사였던 지난 17대 총선을 큰 사고없이 치루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총선을 통해 금권선거가 이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미디어 선거시대에 진입함으로써 한단계 성숙된 선거문화를 이루어 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을 펼치지 못하고 네거티브적 선거운동의 구태를 보인 점은 앞으로 꼭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총선민의를 존중하고 각자가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가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사회 갈등을 하루속히 추스려 나가는데 협력하는 것이라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4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맘때를 전후하여 금년에 계획된 도정이 순조로이 진행되는지를 한번쯤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과 도민의 숙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 도정에 많이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유망기업의 지역유치와 실업해소, 농·어촌 지역의 소득향상 방안에도 역점을 두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도내 일원에서는 여러 건의 산불로 인해 수십년간 애써 가꾼 산림이 황폐화 되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온상승에 따른 각종 전염병 예방에도 역점을 두어 체계적인 방역대책 수립과 응급진료체계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처리 이외에도 2003회계연도 도청과 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선임을 하게 되고 5월 초순경에는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에서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과 상호간 의정활동을 비교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지가 더한층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 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4. 20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차 례

Ⅰ. 개 황 .....

Ⅱ. 의사 일정 .....

1. 소 집 .....

2. 회 기 .....

3. 활 동 .....

가. 본회의 .....

나. 위원회 .....

Ⅲ. 의안 처리 .....

1. 본회의 .....

2. 위원회 .....

Ⅳ. 민원 처리 .....

1. 청 원 .....

2. 진 정 .....

가. 접 수 .....

나. 처 리 .....

Ⅴ.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 접수사항 ·····

2. 조례공포 사항 ·····

3. 기타사항 ·····

Ⅵ. 5분자유발언 ·····

부 록

□ 조 례 안 ·····

□ 동 의 안 ·····

□ 기 타 안 ·····

Ⅰ.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88회 임시회는 2004년 4월 20일 개회하여 4월 29일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7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하여 보면 4월 20일(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8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을 의결하고 휴회하였다.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확인 및 교육청소관 업무보고를 실시 하였다.

4월 29일(목)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박종욱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설립에관한건,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 한 후 제1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라. 집회공고일 : 2004. 4. 6

마. 집 회 일 : 2004. 4. 20(화) 11: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4. 4. 20 ~ 4. 29(10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49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특별
금회	7	1		1	4		1		
누계	216	23	22	31	37	23	26	23	31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 4. 20(화) 11:00	1. 제188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4. 29(목) 11:00	1.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설립에관한건 7.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제 2 차 원안가결 〃 〃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4. 20(화) 10:00	○ 제189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기획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4.26~4.27	○ 현지확인 - 공영개발 사업장(경주, 포항)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4. 20(화) 13:00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 〃
4. 26~4. 28	○ 사회복지시설및지역개발사업현장 (김천, 구미,성주, 고령) - 사회복지시설 1개소 - 지역개발사업현장 5개소 - 연수시설 1개소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4. 20(화) 13:30	○ 경상북도산림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 1 차 수정가결 원안가결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4. 26(월) 11:00	○ 교육청직속기관업무보고 - 경상북도교육연수원, 교육정보센터, 화랑교육원, 과학교육원, 도립구미도서관, 도립상주도서관	제 2 차
4. 27(화) 11:00	○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 포항, 군위, 고령, 성주, 칠곡교육청	제 3 차
4. 28(수) 11:00	○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 영주,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교육청	제 4 차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4.26~4.28	○ 현지확인(경주, 포항) -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 동해안 방파제 및 어항시설	

<산업관광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4. 21(화) 13:30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설립에관한건	제 1 차 원안가결
4. 22~4. 24	○ 현지확인 - 폐광지역개발 및 풍력발전설치 (강원 태백, 정선, 평창)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4.26~4.28	○ 타시도 현지방문(부산, 경남) : 대형프로젝트사업 비교시찰 - 부산항만배후도로건설공사 - 능동터널공사 - 남해안관광일주도로건설공사 - 안정국가산업단지조성공사 등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의·의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결		부결			
				원안	수정				
계		7 (189)	7 (188)	6 (167)	1 (20)	(1)		(1)	
조례안	소계	5 (88)	5 (88)	4 (79)	1 (8)	(1)			
	의회 제안	(7)	(7)	(4)	(2)	(1)			
	도지사 제출	4 (63)	4 (63)	3 (58)	1 (5)				
	교육감 제출	1 (18)	1 (18)	1 (17)	(1)				
예산·결산		(17)	(17)	(8)	(9)				
동의·승인		1 (49)	1 (49)	1 (48)	(1)				
건의안		(7)	(7)	(6)	(1)				
결의안		(8)	(8)	(8)					
기타안		1 (20)	1 (19)	1 (18)	(1)			(1)	유보1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결산	동의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7 (191)	7 (188)	5 (88)	(17)	1 (49)	(7)	(8)	1 (19)			(3)
의회운영	(5)	(5)	(4)				(1)				
기 획	(16)	(15)	(8)		(5)	(1)		(1)			(1)
행정사회	3 (52)	3 (51)	3 (34)		(15)	(1)	(1)				(1)
교육환경	2 (28)	2 (28)	2 (22)		(5)			(1)			
농수산	(12)	(12)	(4)		(7)	(1)					
산업관광	1 (27)	1 (27)	(13)		1 (13)		(1)				
건설소방	(9)	(9)	(2)		(4)	(2)		(1)			
특 별	(17)	(17)		(17)							
본회의	1 (25)	1 (24)	(1)			(2)	(5)	1 (16)			(1)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Ⅳ.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4 (75)	(5)	1 (9)	(9)	(15)	(6)	1 (4)	1 (8)	1 (8)	(11)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8)	(4)	(2)	(1)	(1)					
교육환경	1 (14)			(1)		(6)		1 (7)		
농 수 산	1 (8)			(1)	(1)				1 (6)	
산업관광	2 (16)		1 (7)	(1)			1 (4)			(4)
건설소방	(24)	(1)		(5)	(13)			(1)	(2)	(2)
특별위원회	(3)									(3)

※ ( )안은 제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5 (73)	5 (73)				2 (2)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8)	(8)				
교육환경	(13)	(13)				1 (1)
농 수 산	1 (8)	1 (8)				
산업관광	1 (15)	1 (15)				1 (1)
건설소방	3 (24)	3 (24)				
특별위원회	(3)	(3)				

※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Ⅴ.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4. 4. 10)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4. 4.13)
경상북도지사 (2004. 4. 10)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4. 4.13)
경상북도지사 (2004. 4. 10)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4. 4.13)
경상북도지사 (2004. 4. 10)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설립에관한건	산업관광 (2004. 4.13)
경상북도지사 (2004. 4. 12)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안	교육환경 (2004. 4.13)
경상북도교육감 (2004. 4. 7)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4. 4.13)

2. 조례공포 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4. 3.1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004. 3.22
2004. 3. 1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2004. 4. 1
2004. 3. 1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	2004. 4. 1
2004. 3. 1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2004. 4. 1
2004. 3. 1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개정조례	2004. 4. 1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4. 3.1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 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2004. 4. 1
2004. 3.1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조례	2004. 4. 1
2004. 3. 12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감소속지방공무 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2004. 3.25
2004. 3. 12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위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	2004. 3. 25
2004. 3. 12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	2004. 3. 25

3. 기타 사항

○ **폭설 피해현장 방문 및 격려**

- 일 시 : 2004. 3. 15 ~ 3. 16(2일간)
- 장 소 : 상주, 문경, 안동
- 참 석 : 의장단, 상임위원장

○ **참외원예농업협동조합 공판장 개장식**

- 일 시 : 2004. 3. 17(수). 11:00
- 장 소 : 성주 참외원예농업협동조합
- 참 석 : 방대선 농수산위원장(축사)

○ **종합유선방송 업체와의 간담회**

- 일 시 : 2004. 3. 18 ~ 3. 19(2일간)
- 장 소 : 경주 신라방송, 포항 경북방송
- 참 석 : 최원병 의장

ㅇ 제12회 세계 물의 날 행사

- 일 시 : 2004. 3. 22(월) 11:00
- 장 소 : 포항 형산대교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ㅇ 종합유선방송 업체와의 간담회

- 일 시 : 2004. 3. 24(수). 12:00
- 장 소 : 안동 영남방송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ㅇ 종합유선방송 업체와의 간담회

- 일 시 : 2004. 3. 26(금). 12:00
- 장 소 : 구미 세로렛방송
- 참 석 : 최원병 의장

ㅇ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4. 3. 29(월). 16:00
- 장 소 : 강릉 호텔현대
- 참 석 : 손규삼 운영위원장

ㅇ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 일 시 : 2004. 3. 30(화). 11:00
- 장 소 : 서울 코리아나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

ㅇ 경상북도 상이군경회 정기총회

- 일 시 : 2004. 3. 30(화). 11:00
- 장 소 : 대구 프린스호텔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축사)

ㅇ 나노기술센터 유치 보고회

- 일 시 : 2004. 3. 31(수). 14:00
- 장 소 : 포항 테크노파크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ㅇ 종합유선방송 업체와의 간담회

- 일 시 : 2004. 4. 1(목). 12:00
- 장 소 : 포항방송
- 참 석 : 최원병 의장

ㅇ 『제32회 보건의 날』 행사

- 일 시 : 2004. 4. 7(수). 11: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축사)

ㅇ 2004 경상북도 기능경기 대회

- 일 시 : 2004. 4. 7(수). 11:00
- 장 소 : 구미 기능대학
- 참 석 : 김석호 산업관광위원회 간사(축사)

ㅇ 2004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 일 시 : 2004. 4. 8(목). 11:00
- 장 소 :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 참 석 : 최원병 의장

ㅇ 프랑스 알자스주 방문단과 간담회

- 일 시 : 2004. 4. 9(금). 12:00
- 장 소 : 대구 EXCO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

ㅇ 범도민 『자연정화의 날』 행사

- 일 시 : 2004. 4. 17(토). 10:30
- 장 소 : 경주 서천둔치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ㅇ 『박약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

- 일 시 : 2004. 4. 17(토). 14:00
- 장 소 : 포항공대 체육관
- 참 석 : 최원병 의장(축사)

Ⅵ. 5분 자유발언

□ 제2차 본회의

박종욱 의원(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평소에 저를 사랑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26일날 대구시장이 언론인 간담회에서 대구·경북의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해체해야 할 경북도와 통합의 의미가 없다, 또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통합은 공상이다, 아무런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논하고 난 뒤에 27일날 경북도 직장협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 무슨 저의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규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직장협의회해서 했습니다.

우리 경북과 대구의 역사적 뿌리를 보면 1314년에 경상도라고 칭해 가지고 1896년에 경상북도로 정하고 81년에 대구시가 경상북도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직할시로 갔습니다.

대구시민중에 고향이 경북이 아닌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대구시장이 26일날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경상북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조해녕 시장은 71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행정사무관을 시작해 가지고 영양군수와 금릉군수를 지냈습니다. 고향도 경산이요, 공무원 출발도 경북입니다. 친정이 잘 되어야 시집도 잘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통합 여론에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구와 경북의 통합의 당위성을 논한다면 경북·대구의 역사적 동질성 회복으로 지역 역량을 결집시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동일 생활권으로 형성을 했던 경북·대구를 재통합하여 도민의 공동체의식과 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광역 행정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으로 대구시와 인근 시군의 이해가 대립되는 교통, 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환경, 교육 등 광역 행정수요를 통합하여 도가 기획·조정하고 중재하도록 하여 신속히 해결될 수 있으며, 경북·대구 지역간 기능 분담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하여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체계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개발로 지역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합에 대비한 앞으로의 대책을 논한다면 시도의 자율적인 합의도출을 선행해야 되고, 양 시도간 이해적 관계를 떠나 미래지향적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의 기능을 살리면서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기존 광역시에 대한 특례 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 통합시 대구시는 기초자치단체로 격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3년간 광역시로 분리 운영되어 왔고 인구 250만명의 대도시를 보통시로 환원하면 불합리한 시민정서에도 불화합된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시의 지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권한 즉, 인사·조직·재정 등 대부분의 일반 행정권한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인정하고, 교통·환경개발 등 광역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도가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우리도에서도 앞으로 국회나 중앙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서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통합이라는 명제이므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성하여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저께 저녁에 KBS에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총 8대 2라는 엄청스러운 여론의 80%가 통합을 원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간파하시어 앞으로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긴밀히 대처하여 통합을 대비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 : 5건

○ 동 의 안 : 1건

○ 기 타 안 : 1건

□ 조 례 안 : 5건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4. 2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9조 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소방서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6-7	포항시 일원, 영덕군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경주시 황오동 389-11	경주시 일원
김천소방서	김천시 지좌동 726-4	김천시 일원
안동소방서	안동시 법흥동 32-9	안동시 일원, 청송군 일원, 영양군 일원
구미소방서	구미시 공단동 207	구미시 일원
영주소방서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125-1	영주시 일원, 봉화군 일원
영천소방서	영천시 성내동 48-23	영천시 일원
상주소방서	상주시 서성동 55-1	상주시 일원
문경소방서	문경시 흥덕동 534-1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경산소방서	경산시 조영동 314	경산시 일원, 청도군 일원
의성소방서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700-3	의성군 일원, 군위군 일원
성주소방서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9	성주군 일원, 고령군 일원
칠곡소방서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산5-1	칠곡군 일원
울진소방서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63	울진군 일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4. 2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본문 중 “3,685명”을 “3,796명”으로 하고, 동조제2호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814명”을 ”1,92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685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생략)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814명 3.~4.(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3,796명···· ····· 1.(현행과 같음) 2.····· ····· : 1,925명 3.~4.(현행과 같음)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4. 2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별표1】 건설도시분야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중 주택지적과란 건명 제1호「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란을 삭제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도시분야

소관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주 택 지적과	2.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승인 취소에 관한 권한 (단,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16층이상으로서 500세대이상이거나 1,000세대이상을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주택법 제16조	시장 군수
	3.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교체, 감리업무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24조	
	4. 주택건설사업의 착공신고서 처리	주택법 제16조	

부 칙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청된 사업계획승인등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에 불구하고 신청받은 행정기관에서 처리 후 이관한다.

【별표 1】

신·구조문 대비표

건설도시분야

현 행				개 정 안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택지적과	1.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시장 군수	주택지적과	<삭 제>	<삭 제>	시장 군수
	<신 설>				2.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권한(단,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이상이거나 1,000세대이상을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주택법 제16조	
	<신 설>				3. 감리자의 지정·보고감리자교체, 감리업무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24조	
	<신 설>				4. 주택건설사업의 착수신고수리	주택법제16조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4. 2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존과 학술연구를 통한 산림문화 창달 및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입장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교 학생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중·고등 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순경 포함)을 말한다.
4. "일반"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유료입장객 중 일반은 20인 이상, 어린이 및 청소년은 교사 인솔 입장시를 말한다.

제3조(휴관일) ①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중추절

2.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제외한다.
3. 박물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박물관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 부터 10월 31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말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조(입장료) ①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입장권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입장권은 일반·청소년 및 군인·어린이의 개인입장권과 단체입장권으로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제6조(입장료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자 및 65세 이상인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6.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7.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9.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
10.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제7조(입장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

1. 정신이상자
2. 술에 취한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미만의 어린이
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자
5.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자
6.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자

제8조(행위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섭취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도지사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도지사는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편의시설) ①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장품의 수집) ①경상북도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산림사료에 관한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소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소장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장품의 관리) ①소장은 수장품에 대한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료 처리 및 준용규정) 징수한 입장료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입장료 등 금전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규정은 산림과학박물관 개관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1]

박물관입장료(제5조관련)

(단위:원)

일 반		청소년및군인		어린이		비 고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1,500	1,000	1,000	500	500	300	

수정안 조문대비표

<table>
<tr><th colspan="7">제 정 안</th><th colspan="7">수 정 안</th></tr>
<tr><td colspan="7">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생략)
5. “단체”라 함은 유료 입장객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6조(입장료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별표 1
박물관 입장료(제5조 관련)</td><td colspan="7">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현행과 같음)
5. “단체”라 함은 유료 입장객 중 일반은 20인 이상, 어린이 및 청소년은 교사 인솔 입장시를 말한다.

제6조(입장료 면제) ----------

별표 1
박물관 입장료(제5조 관련)
(단위:원)</td></tr>
<tr><td colspan="2">일 반</td><td colspan="2">청소년및군인</td><td colspan="2">어린이</td><td rowspan="2">비고</td><td colspan="2">일 반</td><td colspan="2">청소년및군인</td><td colspan="2">어린이</td><td rowspan="2">비고</td></tr>
<tr><td>개인</td><td>단체</td><td>개인</td><td>단체</td><td>개인</td><td>단체</td><td>개인</td><td>단체</td><td>개인</td><td>단체</td><td>개인</td><td>단체</td></tr>
<tr><td>2,000</td><td>1,500</td><td>1,500</td><td>1,000</td><td>1,000</td><td>500</td><td></td><td>1,500</td><td>1,000</td><td>1,000</td><td>500</td><td>500</td><td>300</td><td></td></tr>
</table>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4. 4. 29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정 연구 및 학력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3.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및 현장교육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의 연구·지도 및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기 간행물 편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교육정보 자료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이버 교육 및 인터넷 방송에 관한 사항
10. 정보활용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11. 학교도서관(실) 운영 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12. 학생회관 및 향토교육자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다양한 취미를 신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기능 지도

14. 각종 경연 대회, 발표회 및 전시회 장소 제공

15. 탐구·사색·휴식공간 제공

16. 대화·토론 지도를 통한 문제 해결능력 배양

17. 기타 제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 재난·재해 복구 백업센터 운영

2. 전자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3.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교육

4. 평생교육실시 기획 및 운영

5. 제27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제1절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제9조 ~ 제10조 (생략)	제9조 ~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 (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 (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과정 연구 및 학력관리에 관한 사항	1. 교육과정 연구 및 학력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성 교육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실) 운영 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및 현장교육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 및 현장교육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수기기활용·교육방송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의 연구·지도 및 상담 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정기 간행물 편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정기 간행물 편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교육정보 자료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학생회관 및 향토교육자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수·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9. 각종 교육자료의 제작 및 교육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9. 사이버 교육 및 인터넷 방송에 관한 사항**
10. 진로교육의 연구·지도 및 상담 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활용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11. 다양한 취미를 신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기능지도	11. 학교도서관(실) 운영 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12. 각종 경연대회, 발표회 및 전시회의 장소 제공	12. 학생회관 및 향토교육자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탐구·사색·휴식공간 제공	13. 다양한 취미를 신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기능 지도
14. 대화·토론 지도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배양	14. 각종 경연 대회, 발표회 및 전시회 장소 제공
15. 교수·학습지원센터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15. 탐구·사색·휴식공간 제공
16. 기타 제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6. 대화·토론 지도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배양
	17. 기타 제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제3절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제15조 ~ 제16조 (생략)	제15조 ~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7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경상북도 교육정보 서비스망 운영	**1. 경상북도교육청 재난·재해 복구 백업센터 운영**
2. 전자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2. 전자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현 행	개 정 안
3. 정보화 관련 교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4.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교육 5. 평생교육실시 기획 및 운영 **6. 교수·학습지원센터 서비스시스템 운영** 7. 제27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3.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교육 4. 평생교육실시 기획 및 운영 5. 제27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 동 의 안 : 1건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설립에관한건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에 관한 건

경상북도의 풍부한 생물자원과 바이오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 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심의안을 의결한다

1. 의 결 사 항

○ 법인명칭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법인사업

-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경북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북바이오비전2010」 수립
- 바이오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사업을 통한 산업화 지원
- 국내외 바이오기업, 연구소 대학 관련기관간 DB네트워크 구축
- 상주(한방바이오)~안동(생물농업)~울진(해양생명)을 잇는 특화된 바이오벨트 구축 등

2. 향 후 일 정

○ '04. 5 : 재단설립 발기인 총회

- 재단법인 설립 자본금 확보 : 2억(도1, 안동시1)

○ '04. 6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인가(산업자원부)

○ '04. 6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등기(산업자원부)

3. 기 대 효 과

○경북 바이오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으로 지역발전을 선도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통하여 북부 지역경제 활성화

○바이오 관련산업 혁신클러스터 형성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 참 고 사 항 〕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사업현황(설명자료)

□ 사업개요

○위　　치 : 안동시 송천동 1319-84외(농업기술센터 내)

○사업기간 : 2002 ~ 2007(6년간)

○센터현황 : 부지 10,000평, 건물 2,000평(지하1층, 지상3층)

○조직체계 : 3부 6팀 16명(현원 5명)

○총사업비 : 229억원(국비137.3, 도비29.35, 시비56.35, 기타6)

○추진주체 : 경상북도 · 안동시

○주관기관 : (재)경북테크노파크

□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22,900	5,900	4,230	3,200	4,000	3,950	1,620
국　비	13,730	1,300	2,530	1,600	3,400	3,350	1,550
도　비	2,935	950	850	700	200	200	35
시　비	5,635	3,650	850	700	200	200	35
민　자	600			200	200	200	

※ '03. 9 : 행자부 특별교부세 20억원 별도확보

※ 사업비내역 : 건축비85, 장비구입비 103, 기반구축비20, 인건비등21

□ 추진실적

- ○ '02. 1 :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확정
- ○ '02. 5 : 경상북도생물산업운영협의회 구성
- ○ '02. 6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
- ○ '02. 7 : 1차년도 사업협약 체결(산자부, 경상북도)
- ○ '02. 11 : 지원센터 건립사업 협약체결(경북개발공사)
- ○ '03. 1 : (재)경북테크노파크 주관기관 선정
- ○ '03. 4 : 센터장 임용(前 농업기술원장 김형국)
- ○ '03. 7 : 2차년도 사업협약 체결(산자부, 도, (재)경북TP)
- ○ '03. 10 : 지원센터 기공식('04. 4월현재 공정율 30%)
- ○ '04. 1 : 입주업체 선정(13개업체) - 별첨1
- ○ '04. 4 : 직원(연구원) 2명 신규채용

□ 사업기간(6년)별 추진목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부지매입 · 센터건축 · 기반시설 조성	· 센터건축 · 장비구입 · 사업홍보	· 센터건축완료 · 장비구입 · 장비임차 · 사업홍보 · 입주업체 선정	· 장비구입 · 장비임차 · 창업교육 · 기술정보DB · 사업홍보 · 벤처프라자 구축	· 장비구입 · 장비임차 · 자립기반 · 기술정보DB · 제품생산 · 클러스터기반 구축	· 장비구입 · 장비임차 · 자립기반 · 기술정보DB · 사업홍보 · 해외기술 교류

□ 추진체계

□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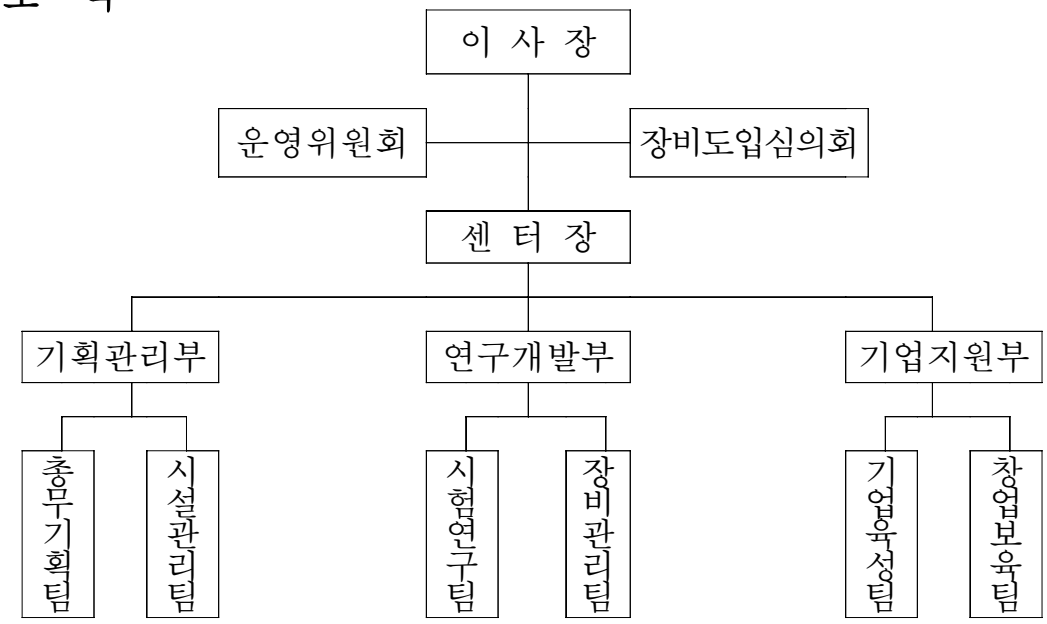

□ 인 력

구분	계	센터장	참여교수	파견	참여연구원	일반직	기능직
인원(명)	16	1	2	2	6	2	3

□ 부서별 정원

구분 / 부서명	계	연구개발·운영사업			파견공무원		일 반 직 원			비고
		겸직	박사	석사	5급	6·7급	팀장	팀원	기능직	
총계	16	2	5	2	1	1	1	1	3	
총무기획	5		1		1(부장)	1(팀장)		1	1	
시설관리	3						1		2	
시험연구	3	1(부장)	1	1						
장비관리	1		1							
기업육성	3	1(부장)	1	1						
창업보육	1		1							

□ 2004예산확보 현황

- ○ 지원센터건립비 : 3,000백만원(국1,600, 도·시비1,400)
- ○ 지원센터운영비 : 200백만원
- ○ 법인설립자본금지원 : 100백만원(시100 별도확보)
- ○ 바이오테크노파크설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 : 50백만원

〈별첨 1〉 입주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1	류충현약용버섯	류충현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2	천지영농법인	이재호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3	(주)포포텍	박두극외1	구미시 공단동	
4	(주)크리포	김광호외1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5	(주)네츄럴바이오	최옥자	안동시 성곡동	
6	(주)한스바이오	최충식	안동시 송천동(창업보육센터)	
7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박관식	영주시 풍기읍 백리	
8	(주)비트로시스	손성호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9	(주)JC PROTEK	이형주	안동시 송천동(안동대)	
10	(주)포디컬쳐	김종성	안동시 송천동(안동대)	
11	(주)제이엔헬스존	김도완	대구남구대명동(계명대)	
12	(주)바이오파머	노창우외1	경산시 진량읍내리(대구대)	
13	(주)송광설중매	서명선	칠곡군 가산면 평복리	

□ 기 타 안 : 1건

○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안 번호	191

제의 년월일 : 2004. 4. 29

제 의 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1. 주 문

경상북도의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경상북도교육청의 200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9명을 선임한다.

2. 제의사유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와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연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도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관련 경험자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나. 자치단체가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검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운용상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기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자 함.

3. 제의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선임 : 9명(인적사항 : **붙임 1**)

- ○ 도 의 원 (3명) : 안순덕, 박영화, 방유봉
- ○ 재무관련 경험자(2명) : 신부일, 박충웅
- ○ 공인회계사 (2명) : 김희철, 이재섭
- ○ 세 무 사 (2명) : 최성탁, 문원호

나. 위촉기간 : 2004. 5. 20 ~ 6. 8(20일간)

※ 업무사정에 따라 검사기간 조정 또는 연장

다. 결산검사 대상

- ○ 200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 2003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붙 임 1〕

결산검사 선임위원 인적사항

구분	성 명	연 령	주 요 경 력	연 락 처	비 고
계	9명				
도의원	**안순덕**	64세	· 제5대도의원 · 제6대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도의회 산업광광위원	011-531-4062	
	박영화	64	· 제6대도의회 운영위원및예결 특위간사 · 제7대도의회 건설소방위원	016-685-1653	
	방유봉	50	· 울진군의회의장 · 제7대도의회 운영위간사, 기획위원	011-813-8777	
재 무 경험자	**신부일**	61세	· 전.회계과 경리담당 · 전.교육사회전문위원	011-9381-2833	
	박충웅	62	· 전.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02)	016-506-8844	
공 인 회계사	**김희철**	34세	· 전.중소기업청기술경쟁력 평가위원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01～'02)	016-614-6728	
	이재섭	36	· '92～'99 안진회계법인 근무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00)	011-545-3959	
세무사	**최성탁**	47세	· '80～'96 세무서 근무 · 2000. 11월 세무사 개업 · 경상북도결검사위원('01～'02)	011-9065-2895	
	문원호	47	· 76～'02 세무서 근무 · 2001. 1월 세무사 개업	011-9588-4043	

의정활동보고서(제188회 임시회)

2004. 5 인쇄 / 2004. 5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